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58호 2021. 3. 17.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25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선)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1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268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 실시계획(변경)인  
가 공람·공고.....3
- 정선군 공고 제2021-298호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5
- 정선군 공고 제2021-299호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 공고.....22
- 정선군 공고 제2021-300호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25

- 정선군 공고 제2021-301호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38
- 정선군 공고 제2021-315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56
- 정선군 공고 제2021-316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68
- 정선군 공고 제2021-336호 정선군 아리랑의 날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7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25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선)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정선군고시 제2019-229호(2019. 11. 01)로 최초 인가 고시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선) 사업에 대하여 당초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폐지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정 선 군 수

## 1. 사업 폐지의 위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7-4번지 일원

## 2. 폐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3-17호선) 사업
- 명 칭 : 신동 소3-17호선(구함백중고) 소교량 설치사업

## 3. 폐지 실시계획인가사업 현황

| 시설명 | 군계획시설 결정 |                  | 실시계획인가 폐지       | 비 고 |
|-----|----------|------------------|-----------------|-----|
|     | 세부시설명    | 연장·폭원            | 연장·폭원           |     |
| 도로  | 소로3-17호선 | L=442.0m, B=6.0m | L=40.8m, B=6.0m |     |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5. 사업기간(당초)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0. 9.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토지조서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br>면적<br>(㎡) | 편입<br>면적<br>(㎡)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br>및 내용 |
| 1  | 신동읍<br>조동리 | 268   | 대  | 1,808           | 134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 이*한   |       |    |                |
|    |            |       |    |                 |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 이*한   |       |    |                |
|    |            |       |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이*대   |       |    |                |
| 2  | “          | 267-1 | 대  | 522             | 7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이*웅   |       |    |                |
|    |            |       |    |                 |                 | 서울 동대문구 현저동 | 이*규   |       |    |                |
|    |            |       |    |                 |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 이*한   |       |    |                |
|    |            |       |    |                 |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 이*한   |       |    |                |
| 3  | “          | 267-4 | 철  | 1,347           | 30              | -           | 국토교통부 |       |    |                |
| 계  |            | 3필지   |    | 3,677           | 238             |             |       |       |    |                |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268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2652호(1974. 4. 09.)로 최초 결정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 사업
- 2) 명 칭: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 개설사업(소교량)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명 | 군계획결정     |                | 실시계획인가         | 비 고 |
|-----|-----------|----------------|----------------|-----|
|     | 세부시설명     | 연장·폭원          | 금회 변경 시행       |     |
| 도로  | 소로 3-17호선 | L=442m, B=6.0m | L=105m, B=6.0m |     |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0

바. 공람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2021. 3. 12. ~ 2021. 3. 26.)

사. 공람장소: 정선군 도시과 (☎033-560-2456)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 순<br>번 | 위 치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공부      | 편입  | 주 소   | 성명  | 관계<br>인 | 성명 | 소유권이외<br>의권리의종<br>류및내용 |
| 1      | 신동읍<br>조동리 | 268    | 대   | 964     | 22  | -     | 정선군 |         |    |                        |
| 2      | 신동읍<br>조동리 | 268-2  | 대   | 466     | 466 | -     | 정선군 |         |    |                        |
| 3      | 신동읍<br>조동리 | 267-12 | 대   | 106     | 22  | -     | 정선군 |         |    |                        |
| 4      | 신동읍<br>조동리 | 267-13 | 대   | 74      | 74  | -     | 정선군 |         |    |                        |
| 5      | 신동읍<br>조동리 | 267-15 | 대   | 106     | 106 | -     | 정선군 |         |    |                        |
| 계      |            |        |     | 1,718   | 690 |       |     |         |    |                        |

정선군 공고 제2021-298호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조례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6.9.공포, ’ 21.6.10.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조례의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 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부담(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03. 10. ~ 2021. 03. 30.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3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시설국 산림과

- 연락처 : 전화(033-560-2086), 팩스(033-560-201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시설국 산림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 건 | 비고 |
|----------|------|-----|-----|----|
|          | 찬 성  | 반 대 |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가.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왕복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분리대로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나. “수벽”이란 보·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보행자 공간 쪽에 설치한 공간에 잔디나 나무 등 조경 수목을 심은 것을 말한다.

다. “부담금”이란 훼손된 가로수(녹지대, 중앙분리대, 수벽 등 포함) 및 가로수 관리 시설물 등의 복구에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이 조안에서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에 따른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서 구성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도시숲 등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① 도시숲 등의 수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도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4.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해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9조(조성협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및 군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를 따른다.

1. 도시숲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식재 위치, 식재 기준, 식재 시기, 식재 제한지역 등
2.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바위심기, 메위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지형과 토양보전, 관리시설물, 점검, 관리대장, 주민참여 등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업체
2. 「산림조합법」 제46조와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녹지조경업 등록업체

제12조(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비용은 별

표에 의거 신청자가 부담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신청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별표에 의거 산정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상복구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제13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6.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 (생 략)</b></p> | <p><b>제1조(목적)</b>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br/>-----<br/>도시숲 등의 -----<br/>-----<br/>-.</p> <p><b>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b></p> <p>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p> <p>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p> <p>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p> <p>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p> <p>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p> <p>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p> |

|                                                                                                                                                                                                                                                                                                                                                                                                                                                                                                                                                                         |                                                                                                                                                                                                                                                                                                                                                                                                                                                                                                                                                                                                     |
|-------------------------------------------------------------------------------------------------------------------------------------------------------------------------------------------------------------------------------------------------------------------------------------------------------------------------------------------------------------------------------------------------------------------------------------------------------------------------------------------------------------------------------------------------------------------------|-----------------------------------------------------------------------------------------------------------------------------------------------------------------------------------------------------------------------------------------------------------------------------------------------------------------------------------------------------------------------------------------------------------------------------------------------------------------------------------------------------------------------------------------------------------------------------------------------------|
|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b>제3조(적용범위)</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림등(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p> <p><b>제4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b></p> <p>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림등 (생 략)</p> <p>② 계획은 도시림 자원의 (생 략)</p> <p><b>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b></p> <p>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정선군 도시림등의 (생 략)</p> <p>1. 법 제20조에 (생 략)</p> <p>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p> <p><b>제6조(위원회 구성)</b></p> <p>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등의 (생 략)</p> | <p>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p><b>제3조(적용범위)</b>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p> <p>-----</p> <p><b>제4조(도시숲 등의 -----</b></p> <p>-----)</p> <p>① -----법 제6조에-----</p> <p>--- 도시숲 등의 (생 략)</p> <p>②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생 략)</p> <p><b>제5조(도시숲 등의 -----</b></p> <p>-----)</p> <p>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생 략)</p> <p>1. 법 제6조에 (생 략)</p> <p>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p> <p>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p> <p>-----</p> <p><b>제6조(위원회 구성)</b></p> <p>② -----</p> <p>-----도시숲 등의 (생 략)</p> |
|-------------------------------------------------------------------------------------------------------------------------------------------------------------------------------------------------------------------------------------------------------------------------------------------------------------------------------------------------------------------------------------------------------------------------------------------------------------------------------------------------------------------------------------------------------------------------|-----------------------------------------------------------------------------------------------------------------------------------------------------------------------------------------------------------------------------------------------------------------------------------------------------------------------------------------------------------------------------------------------------------------------------------------------------------------------------------------------------------------------------------------------------------------------------------------------------|

## ③ (생 략)

1.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제8조(도시림등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① 도시림등의 수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9조(조성협의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생 략)

제10조(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생 략)

1. 도시림등 조성에 (생 략)

2. 도시림등 관리에 (생 략)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생 략)

제11조(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행)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4. <신 설>

제12조(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부담) ①

## ③ (생 략)

1. 도시숲 등의 -----  
-----

제8조(도시숲 등의 -----  
-----)

① 도시숲 등의 -----  
-----.

제9조(조성협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 략)

제10조(도시숲 등의 -----  
-----) 도시숲 등의 ----- (생 략)

1. 도시숲 등의 ---- (생 략)

2. 도시숲 등의 ---- (생 략)

3. ----- 도시숲 등의 -----  
(생 략)

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행) 도시숲 등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업체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녹지조경업 등록업체

제12조(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부담) ①





## 관계법령 발췌

## □ 산림기본법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숲법)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

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1

## 비용의 산정 기준(제12조)

## 1. 사업 신청의 경우 (제12조제1항)

## 가. 식재 또는 이식하는 경우

1)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제12조제4항 위반 시 제12조제5항 적용

2)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사업비 부담

## 나. 가지치기 또는 제거하는 경우

1)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제12조제4항 위반 시 제12조제5항 적용

2)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사업비 부담

## 2. 피해발생의 경우(제12조제5항)

## 가.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비 부담

## 나.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수목비의 20%, 보호시설재료비 등 사업비 부담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다.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재료비 등 사업비 부담

○ 사업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의한 추정금액

○ 수목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를 따른다.

[별지 서식]

##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성 명(명칭)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연락처 |   |
| 사업<br>대상                                                                                                                                                             | 가로수 위치  |                          |    |                          |     |   |
|                                                                                                                                                                      | 수 종     |                          | 규격 | 수 고 :<br>흉고직경 : , 근원직경 : | 수량  | 본 |
| 이 식 사 유                                                                                                                                                              |         |                          |    |                          |     |   |
| 작 업 방 법                                                                                                                                                              |         |                          |    |                          |     |   |
| 작 업 기 간                                                                                                                                                              |         | 년 월 일부터<br>년 월 일까지 ( 일간) |    |                          |     |   |
| 부담금                                                                                                                                                                  | 금 액     | 금 원정( )                  |    |                          |     |   |
|                                                                                                                                                                      | 납부기간    |                          |    |                          |     |   |
| <p>「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정 선 군 수 귀 하</p> |         |                          |    |                          |     |   |
|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p> <p>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p>                                                                                                   |         |                          |    |                          |     |   |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기에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 4. 작성자

산림과장 지형규

정선군 공고 제2021-299호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희망자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

정 선 군 수

1. 접수기간 : 2021. 3. 9. ~ 3. 23. (15일간)
2. 장 소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3. 양도대상 차량
  - 소 유 자 : 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납덕안길 \*)
  - 차량번호 : 강원51바1097
4. 접수대상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관내 거주자 중 다음 조건을 갖춘 자임.

가. 양수 기본자격 대상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1) 운전경력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동안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동안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 , 나) 운전경력 합산자

-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단,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 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 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2) 거주기간 등

- 가)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 관내에서 2년간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나)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자.

나. 운전경력이 위 가항에 해당신청자가 없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양수자 등의 기본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함.

## 5. 접수 제외 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

## 6. 구비서류

-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가용운전 경력의 경우 채용관련 증빙서류, 대표자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원부, 기타 운전경력 입증서류)
- 나. 건강진단서 1부.
-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서 1부.
-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마. 주민등록초본 1부.
-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사.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아.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1부.

## 7. 접수결과 조치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요건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신청자 명단은 개인택시정선군지부(☎592-2580)로 통보하게 되며, 개인택시 양도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033-560-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1-300호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관련 행정절차에 있어, 위탁사무, 위탁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 사후 관리까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의 내용을 규정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 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명 변경
  - 1) 당초 :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2) 변경 :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안 제4조)
- 라. 의회 동의(안 제5조)
- 마.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안 제6조 및 제7조)
- 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5조)
- 사. 수탁기관 관리 및 운영(안 제16조 ~ 제24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3. 10. ~ 2021. 3. 30. (20일간)

##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총무행정관)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연락처 : 전화(033-560-2232), 팩스(033-560-2590)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해당 위탁 계획에 대하여 그 다음 진행절차의 충분한 기간 전에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1회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거나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20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해당 사무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가 포함된 때에는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적용례)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⑮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⑯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⑱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⑲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전단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⑳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㉑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9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㉒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㉓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㉔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㉕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㉖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㉗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301호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당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를 5일에서 7일(토요일, 공휴일 불포함) 이내 실시(안 제5조)
- 나. 재택당직 및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기준 개정  
(안 제6조제5항)
- 다. 재택당직(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 포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정상근무일에 08:30까지 잠금장치와 당직실 착신전환을 해제(안 제8조제5항)
- 라. 당직근무자는 필요시 당직차량을 운행 가능(안 제12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1. 3. 9 ~ 3. 29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우편번호 26131)

○ 연락처 : 전화(033-560-2205), 팩스(033-560-2590), 이메일(k12345@korea.kr)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개정규칙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 견 | 비고 |
|------------|------|-----|-----|----|
|            | 찬 성  | 반 대 |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택당직자””를 ““재택당직””로, “사람”을 “것”으로 한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2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5일”을 “7일(토요일, 공휴일 불포함)”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치안상황”을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청(3일 미만 공휴일 및 평일)

제6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당직반장(7급이하) : 1명

다. 당직원(8급이하) : 1명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동일직급에 대리근무”를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로, “당직근무일의”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 ⑤ 재택당직(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 포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정상근무일에

8:30까지 잠금장치와 군 당직실 착신전환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언으로 일직 근무자와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필요 시 당직운전원이 아니라도 당직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 10. 당직명령부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당직사령 보좌) 3일 이상 공휴일일 경우 본청에 당직 보좌관을 두고 3일 미만 공휴일과 평일에는 당직반장을 둔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상황실 설치)”를 “(상황실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 (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총무행정관실·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총무행정관실 직원과 각 과소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총무행정관실 문서담당 직원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⑤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⑥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br>1. “ <u>당직사령</u> ”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지역단위 당직 사령 운영에 따른 당직 근무자 또는 군본청의 평일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 제3조(정의) -----<br>-----.<br>1. “ <u>당직사령</u> ”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
| 2. 삭 제                                                                                                                                           |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4. “ <u>재택당직자</u> ”라 함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당직근무를 하는 <u>사람</u> 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05.03.]                                  | 4. “ <u>재택당직</u> ”이-----<br>-----<br>-----<br>----- <u>것</u> -----<br>-----                     |
| 제4조의2(당직수당) ① (생략)                                                                                                                               | 제4조의2(당직수당)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근시간후 <u>2시간</u> 을 초과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 ②-----<br>-----<br>-----<br>----- <u>3시간</u> -----<br>-----<br>-----.                           |

## ③ (생 략)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5.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생 략)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생 략)

2. 본청(연휴외의 경우)

가. (생 략)

나. 당직원(7급이하) : 2명

<신 설>

3. · 4. (생 략)

③ 삭 제

④ (생 략)

⑤당직근무자의 편성시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  
-----  
-----  
-----.  
-----  
-----  
-----  
-- 7일(토요일, 공휴일 불포함) --  
-----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  
-----.

1. (현행과 같음)

2. 본청(3일 미만 공휴일 및 평일)

가. (현행과 같음)

나. 당직반장(7급이하) : 1명

다. 당직원(8급이하) : 1명

3.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1. ~ 3. (생 략)

⑥ 당직근무가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편성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8.05.03.]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 략)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에 대리근무를 정하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  
-----  
-----  
-----  
-----  
별지 제13호서식-----  
-----  
-----  
-----  
-----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

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  
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

② (생 략)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  
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  
다.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  
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생 략)

⑤ 재택당직자는 귀가 후 다음날  
08:00까지 조기 출근하여 잠금장  
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근무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는 전언으로 일직근무자와 인계인  
수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  
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  
된 별표 2의 표찰을 패용하여야

----- 당직근무 --  
-----.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  
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  
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  
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⑤ 재택당직(당직을 실시하지 않  
는 기관 포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정상근무일에 8:30까지 잠금장치  
와 군 당직실 착신전환을 해제하  
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언으로 일직 근무자와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생 략)

<신 설>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당직명령서

11. ~ 13. (생 략)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8조(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군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생 략)

② (생 략)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당직근무자는 필요 시 당직운전원이 아니라도 당직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당직명령부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  
----- 있으며, 전산으로 기록  
· 관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당직사령 보좌) 3일 이상 공휴일일 경우 본청에 당직 보좌관을 두고 3일 미만 공휴일과 평일에는 당직반장을 둔다.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 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담당관·과장·소장,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은 평시어 미리 비상근무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의 종류별 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 ③  
(생 략)

④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  
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  
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행정관, 세무회계  
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  
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행정관과 각  
실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  
다.
3. 연락반 :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  
다.

⑥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  
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  
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⑦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  
연락 대기차량으 로 한다.

제28조(상황실 설치) ①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제28조(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현  
행과 같음)

②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안자동 : 700
2. 일반전화 : 62-4599
3. 행정전화 : 222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③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총무행정관실 ·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총무행정관실 직원과 각 과소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총무행정관실 문서담당 직원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⑤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

<신 설>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  
대하여 휴식하되 근 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⑥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  
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2조의6(위임규정)

-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정선군 공무원 복무 조례」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전)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7항 관련)

**당직근무 제외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     |     |        | 사 유 | 제외기간 | 비 고 |
|----------|-----|-----|--------|-----|------|-----|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성별     |     |      |     |
|          |     |     | 남<br>여 |     |      |     |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변경후)

[별지 제13호 서식] (제6조제7항 관련)

**당직근무 제외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     |     |        | 사 유 | 제외기간 | 비 고 |
|----------|-----|-----|--------|-----|------|-----|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성별     |     |      |     |
|          |     |     | 남<br>여 |     |      |     |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

-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정선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315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안 제4조제2항)
  - 재산관리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2020.12.22.) 반영
  - 대부료·사용료의 감면과 관련된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문 수정 및 삭제(안 제29조, 제31조, 제33조)
  - 대부료·사용료의 납부부담 완화(제34조)
- 3급 관사 운영비 지원 조건 완화(안 제55조)
  - 종전)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 신설)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3급 관사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기타 오탈자 정정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1. 3. 12. ~ 2021. 4. 1.(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회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02), 팩스(033-560-2272)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가.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개 정 안 | 찬성여부 |    | 의 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액”을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를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료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9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을 “10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3월 이내 2회”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 이내 3회”를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9월 이내 4회”를 “9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4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분납

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이”를 “교육지원청이”로, “교육청에”를 “교육지원청에”로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3급 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7조를 제68조로 하고,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br>-----<br>-----<br>-----.        |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b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과장과 나머지 1명은 심의회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br>---- 담당국장-----.                                              |
| ③ ~ ⑨ (생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생략)                                                                                                         |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br>-----<br>-----.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3. (생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삭제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자 할 경우 공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2. · 3.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  
법인등을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  
-----.

1. · 2. (현행과 같음)

④ -----  
-----  
-----  
-----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

---- 감면-----.

⑤ 제19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대부료 등의 -----  
-----  
---

⑦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  
-----  
-----  
--- 100-----.

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신 설>

③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개월 이내 ----
2. ----- 6개월 이내 ----
3. ----- 9개월 이내 ----

4. 4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분납

<삭 제>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                                                                                                                                                                                                                                                                                                                                                                                                                                                                             |                                                                                                                                                                                                                                                                                                                                                                                                                                                                                                                           |
|-----------------------------------------------------------------------------------------------------------------------------------------------------------------------------------------------------------------------------------------------------------------------------------------------------------------------------------------------------------------------------------------------------------------------------------------------------------------------------|---------------------------------------------------------------------------------------------------------------------------------------------------------------------------------------------------------------------------------------------------------------------------------------------------------------------------------------------------------------------------------------------------------------------------------------------------------------------------------------------------------------------------|
| <p>2. <u>교육청이</u>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u>교육청에</u> 매각하는 때</p> <p>3. · 4.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략)</p><br><p><u>&lt;신설&gt;</u></p><br><br><br><br><br><br><br><br><br><br><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 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u>에 의뢰한다.</p> <p><u>&lt;신설&gt;</u></p><br><p><u>제67조</u> (생략)</p> | <p>2. <u>교육지원청이</u> -----<br/>--- <u>교육지원청에</u>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3급 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br/>-----<br/>-----<br/>-----<br/>-----.<br/>-----<br/>-----<br/>-----<br/>----- 감정평가법인등-----.</p> <p>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u>제68조</u> (현행 제67조와 같음)</p> |
|-----------------------------------------------------------------------------------------------------------------------------------------------------------------------------------------------------------------------------------------------------------------------------------------------------------------------------------------------------------------------------------------------------------------------------------------------------------------------------|---------------------------------------------------------------------------------------------------------------------------------------------------------------------------------------------------------------------------------------------------------------------------------------------------------------------------------------------------------------------------------------------------------------------------------------------------------------------------------------------------------------------------|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4조(사용료)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1-316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부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감정평가업자 용어 정비에 따른 사항 반영(안 16조제2항, 제31조)
-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9조)
- 기타 오탈자 정정

3.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1. 3. 12. ~ 2021. 4. 1.(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회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02), 팩스(033-560-2272)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가.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나.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개 정 안 | 찬성여부 |    | 의 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정선군 규칙 제 호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를 “담당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31조 중 별지 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목록

| 목 록       | 서 식 명    |
|-----------|----------|
| 별지 제22호서식 | 토석가격평가조서 |

[별지 제22호서식]

##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 소재지 | 지번 | 토석<br>종류 | 석재<br>종류 | 용도 | 규격 | 수량<br>(A) |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 <sup>3</sup> ) |                      |      | 평가가격                          |             | 비고 |
|-----|----|----------|----------|----|----|-----------|-------------------------------|----------------------|------|-------------------------------|-------------|----|
|     |    |          |          |    |    |           | 매매<br>실례                      | 사정정통기관 또는<br>감정평가법인등 |      | m <sup>3</sup> 당<br>단가<br>(B) | 금액<br>(A×B) |    |
|     |    |          |          |    |    |           |                               | 〇〇단체                 | 〇〇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감정평가법인등)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기부채납) ①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br>1. ~ 6. (생략)<br>② (생략) | 제11조(기부채납) ①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 」-----<br>-----<br>-----<br>-----<br>-----<br>----- . .<br>1. ~ 6.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16조(가격평정) ① (생략)<br><br>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업자</u> 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6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br><br>②-----<br>----- <u>감정평가법인등</u> -----<br>-----<br>-----<br>----- .                                    |
| 제19조(매수신청) ① <u>실·과</u> 및 사업소읍·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br>1. ~ 10. (생략)<br>② (생략)                                                      | 제19조(매수신청) ① <u>담당관</u> .-----<br>-----<br>-----<br>----- .<br><br>1. ~ 10.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② (생략)                                                                                                                                                   |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

|                                                                                                                               |                                                                                                     |
|-------------------------------------------------------------------------------------------------------------------------------|-----------------------------------------------------------------------------------------------------|
| <p>략)</p> <p>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 이 라 한 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 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p> | <p>행과 같음)</p> <p>③-----<br/>----- 「공유재산 및 물품 관<br/>리법」 제46조-----<br/>-----<br/>-----<br/>-----.</p> |
| 제31조(가격평가조서) (생 략)                                                                                                            | 제31조(가격평가조서)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발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336호

「정선군 아리랑의 날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아리랑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아리랑의 본고장 정선에서 최초로 정선군 아리랑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외 아리랑 전파 및 교류의 선도적 역할 추진
- 아리랑의 원조인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 정선아리랑의 강원도무형문화재지정, 아리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및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기념일 지정(안 제2조)
- 기념식 및 행사(안 제3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03. 17. ~ 4. 6.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8),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아리랑의 날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아리랑의 날 조례(안)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우리 한민족과 민족통합의 상징중 하나인 아리랑의 원조 정선 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인류의 소중한 문화로서의 가치가 나날이 새로워짐에 따라 기념일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 지정) 아리랑의 날은 매년 12월 5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정선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아리랑의 날 기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리랑의 날 기념식
2.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
3. 기타 아리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